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규칙·매뉴얼로부터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하도록 법이 개정('23.8.16.)되어 시행이 예정('24.2.17.)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소속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실무위원회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대신하여 각각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5조, 제3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70조)

- 1) 현행 규정은 제35조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5조의3, 제66조의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 해촉 사유 등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동일하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규모별 투자심사 실시주체 규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기존의 시행령은 사업의 유형·규모별 심사대상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의 유형·규모별 심사 실시주체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라.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2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재난예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마.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3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사업,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중앙관서”란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무총리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을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원

제35조의3제2항 중 “위원장이”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제35조의3제3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는”을 “제1항의”로, “사항”을 “분과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실무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실무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로,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도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37
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는 200억원) 미만
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
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
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제1호가목의 인
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의 타당성조사 또는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제41조의4로 하고,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등) ①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1.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호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 보수사업
3.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 대상사업(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은 제외한다)
5.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9.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③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타당성조사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의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목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65조의3,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중앙관서”란 국무조정 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 방 재 정부 담 심 의 위 원 회 (이 하 “지 방 재 정부 담 심 의 위 원 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 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 다.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 성) ① ----- -----기획재정부, 국무조정 실 등 대통령령----- ----- 중앙관서”란 기획재정 부, 행정안전부, ----- 지방 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 정관리위원회”----- ----- ----- --.		
② 삭 제		③ ----- ----- -----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 ----- ----- -----.		
⑤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의2제4 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		
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운영)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의 위원장-----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의 회의-----.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④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의 심의에 부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관계 -----

-----.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 설>

1. ~ 3. (생략)

-----.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⑧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이

-----.

1.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③ 각 분과위원회-----

-----.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⑤ 제1항의 -----
분과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
-----.

1.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법 제27조의2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1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

터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지방재정부담심
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법 제27조의2제1항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
터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
항

다.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
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

<삭 제>

⑥ 각 분과위원회-----

----- “지
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회”-----.

⑦ 각 분과위원회 -- 제1항제3
호-----

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복구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제1항제4호-----

--. <후단 삭제>

⑧ -----

----- 각 분과위원회-----

-----.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
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
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
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
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
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
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
· 체육시설 신축사업

되는 사업

<신 설>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투
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
억원(「지방자치법」 제19
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
구 100만 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는 200억원) 미
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
업비 2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
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
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제1호가목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의 타당성조사 또는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등) ①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1.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 기계화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
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
지·보수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호용 증
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
보수사업

3.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
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
대상사업(다만,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은 제외
한다)

5.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
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9.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신 설>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③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
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타당성조사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의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
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제41조의2 (생략)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목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제41조의4 (현행 제41조의2와 같음)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
(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
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재
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
다)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
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
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상정안전과 관련된 중앙관서로
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를 말한다.

④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56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의2(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

<삭 제>

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
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
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
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
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다.

④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
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
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
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
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
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

⑦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6조제
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위
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위
기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⑧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
회 위원 중 제2항제2호의 위원
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2항제
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6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생략)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생략)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⑤ -----

우에는 <u>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 5. (생략) ⑥ (생략)	----- <u>지방재정관리위원회</u>----- ----- -----. 1.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15